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2일, 이철규의원 등 16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8.20.)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원안가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8.19.)

제2차 전체회의 (2024.8.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철규의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8.19.)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8.20.)에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 간주됨.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법률 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로 사용한다. 1. ~ 10. (생 략) 1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 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 에 따른 <u>소재·부품·장비경 쟁력강화특별회계</u> 에의 진출 12. (생 략) 법률 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의4제2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u>2024년 12</u> <u>월 31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 <u>소재·부품·장비경쟁 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 별회계</u> ----- 12.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u>2029년 12</u> <u>월 31일</u> -----.